##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정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8325 발의연월일: 2025. 2. 21.

발 의 자:박 정·문진석·이용우

허 영·박용갑·임오경

김태선 · 어기구 · 김정호

안호영 · 소병훈 · 김성회

의원(12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폐기물부담금 및 재활용의무 대상 여부 확인을 위해 환경 부장관은 국세청장에게 과세정보를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는 부과대상 사업장의 누락을 방지하고 보다 정확한 과세정보에 기초하여 부담금 또는 부과금을 부과하기 위함이지만, 과세정보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가 적시되어 있지 않아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음.

이에 행정목적 달성에 필요한 최소한의 과세정보를 보다 구체화 하기 위해 '필요한 과세정보'를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정보'로 하고, '납세자 인적사항'을 '사업자등록번호'로 개정하려는 것임(안 제37조제3항).

법률 제 호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7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필요한 과세정보"를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정보"로 하고, 같은 항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 제3호를 삭제한다.

1. 사업자등록번호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7조(관계 기관의 협조) ①・②	제37조(관계 기관의 협조) ①・②		
(생 략)	(현행과 같음)		
③ 환경부장관은 폐기물부담금	③		
및 제16조에 따른 재활용의무			
대상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	부		
필요한 과세정보를 국세청장에	가가치세 과세표준 정보		
게 요청할 수 있다.			
1. 납세자 인적사항	1. 사업자등록번호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3. 폐기물부담금 및 재활용의무	<u>&lt;삭 제&gt;</u>		
의 산출 또는 면제의 판단기준			
이 되는 매출금액에 관한 사항			